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185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9. 6. 10.
발 의 자 : 김판동 의원 외 12인

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「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」가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규칙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개정된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 (안 제1조, 제4조).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(안 제5조 제3항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

- 지방자치법 제83조
-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- 안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안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”를 “「안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제75조”를 “제8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위원 회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윤리특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안산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</p>
<p>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안산시의회의장(이 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당해 의원에 대 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 사보고 한다.</p>	<p>제4조(기능) ①----- ----- 「안산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</p>
<p>제5조(윤리심사요구와 회부) ① - ②(생략) ③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1/5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 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,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다</p>	<p>제5조(윤리심사요구와 회부) ① - 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제83조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부 칙</u></p> <p>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p>